

의안번호	2210926
의 퇴 인	김동아 의원
회 답 일	2025.08.05.
추 계 번호	25C337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또는 면제)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유지 기간, 부부 합산 소득, 대출 잔액 및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2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또는 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채무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한 학자금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학자금대출 사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두 유형으로 이루어지며¹⁾, '25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에 1조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560억원이 편성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및 면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은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②혼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다자녀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재정소요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자의 이자 미수취분과 상환 면제자의 대출원리금임
-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수, 대출잔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한국장학재단 등은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면제의 판단 기준, 유예 기간 내 이자 수취 여부를 비롯한 관련 절차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 폐업 신고자, 실직자 등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²⁾, 동법에 의해 해당 인원은 유예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됨³⁾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위와 같이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